#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후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8846

발의연월일: 2022. 12. 9.

발 의 자 : 윤후덕 · 김경협 · 김정호

송갑석 • 이동주 • 이원욱

이형석 · 임종성 · 최기상

홍기원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

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,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하여 청소년쉼터를 설치·운영하고 있음.

그런데 가정 밖 청소년 발생의 예방뿐 아니라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역시 중요하며, 주거가 불확실한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위해서 이들에 대한 주거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음.

또한 현재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 입소하는 경우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가정폭력 및 친족성폭력 피해자의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도록 법률에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가정 밖 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ㆍ시행, 가정

밖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주거시설의 확충 등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두텁게 하려는 것임.

## 주요내용

- 가.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·홍보·연구·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함(안 제16조제1항).
- 나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주거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(안 제16조제3항신설).
- 다. 청소년쉼터를 설치·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청소년쉼터에 가정폭력 및 친족에 의한 성폭력, 그 밖에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원인이 되어 가정 밖 청소년이 입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도록 함(안 제32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1항 중 "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"를 "청소년 발생 예방 및 지원을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주거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제32조의2의 제목 중 "계속 이용"을 "이용 등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(종전의 제1항) 각 호 외의 부분본문 중 "가정폭력, 친족에 의한 성폭력, 그 밖에 가정으로 복귀하여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"를 "제1항 단서에 따른 사유"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"제1항"을 "제2항"으로 한다.

① 청소년쉼터를 설치·운영하는 자는 해당 청소년쉼터에 가정 밖 청소년이 입소하는 경우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에게 연락하여야 한 다. 다만, 가정폭력 및 친족에 의한 성폭력, 그 밖에 가정으로 복귀 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원인 이 되어 입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혅 했 개 정 아 제16조(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제16조(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)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워) ① -----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 청소년 발생 예방 및 지원을---한 교육・홍보・연구・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 · 시행하여야 하다. ② (생략) ② (현행과 같음) <신 설>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 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주거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시 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 4·5 (현행 제3항 및 제4항 ③·④ (생 략) 과 같음) 제32조의2(가정 밖 청소년의 청 제32조의2(가정 밖 청소년의 청 소년쉼터 계속 이용) <신 소년쉼터 이용 등) ① 청소년 쉼터를 설치・운영하는 자는 설> 해당 청소년쉼터에 가정 밖 청 소년이 입소하는 경우 해당 청 소년의 보호자에게 연락하여야 한다. 다만, 가정폭력 및 친족 에 의한 성폭력, 그 밖에 가정 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 ① 청소년쉼터(가정 밖 청소년 을 7일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청소년쉼터는 제외한 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를 설 치 · 운영하는 자는 해당 청소 년쉼터에 입소한 가정 밖 청소 년이 가정폭력, 친족에 의한 성 폭력, 그 밖에 가정으로 복귀하 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원인이 되어 입소한 경우에는 그 가정 밖 청소년 본인의 의 사에 반하여 퇴소시켜서는 아 니 된다. 다만, 해당 가정 밖 청소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.

#### 1. • 2. (생략)

② 청소년쉼터를 설치·운영하는 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을 퇴소시키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렁으로 정하

운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
하는 사유가 원인이 되어 입소
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
<u>하다.</u>
<u>②</u>
<u>제1항 단서에 따른 사유</u>
1.·2. (현행과 같음)
_ <del></del>
제1항 단서에 따른 사유   

는 바에 따라 다른 청소년복지	
시설에의 입소 등 보호에 필요	
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	
한다.	